

불법어업 지도·단속 사전예고 안내문

추진목표

- ◆ '선(先) 지도, 후(後) 단속'을 통해 어업인 자율에 의한 준법조업 분위기 조성 및 불법어업 예방, 투명·공정한 행정 구현

1 육·해상 지도·점검·단속 계획

□ 하계 “휴가철”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불법 포획행위

- 스킨스쿠버 장비(공기통, 작살 등)를 이용한 불법나잠어업* 및 비어업인 포획·채취행위**에 대한 육·해상 점검
- * [법령근거] 「수산업법」제63조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법령근거] 「수산자원관리법」제18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접경수역 내 우리어선 안전조업 및 日EEZ 월선조업 강력 단속

- 日EEZ 경계선 근접조업 어선(서남구저인망, 근해자망, 채낚기 등)에 대한 월선조업 금지 지도 강화, EEZ침범 시 강력 단속*
- * [법령근거] 「수산업법」 제33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어업정지] 1차 30일, 2차 60일, 3차 90일
- GPS 플로터 등 항해장비의 세계측지계(WGS-84) 사용

□ 대게·붉은대게 포획금지기간 위반행위

- 대게 및 붉은대게 포획이 금지됨에 따라 연·근해 조업 어선을 대상으로 불법어업 집중 단속 및 유통·보관 행위 육상 점검 강화
- * 대게포획 금지기간 : 6.1. ~ 11.30.(동경 131도 30분 이동해역은 6.1.~1.31.)
- ** 붉은대게 포획 금지기간 : 7.10. ~ 8.25.(강원 연안자망어업은 6.1.~7.10.)

□ 제1,2구 잠수기 시범사업 이행요건 점검

- TAC 어획량 보고, 지정위판장 매매 및 위치발신장치, CCTV 작동 등에 대한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이행요건 준수이행 점검

□ 동해안 참다랑어 불법 포획·유통 점검 강화

- 태평양 참다랑어 어획쿼터의 효율적이고 엄격한 관리를 위한 어업별 TAC 허위 실적보고 및 사매매·유통 집중 점검·단속

* 경상북도 정치망어업의 태평양 참다랑어 포획 정지 명령 시행('23.6.22.)

** [법령근거] 「참다랑어 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해양수산부 고시 제2023-56호, 2023. 3. 15.) 제5조 및 제6조

□ 어구실명제 점검·홍보 강화

- 어구의 표시 방법(제83조제2항 관련)

1. 「내수면어업법」 제3조에 따른 수면에 어구를 설치할 때에는 해당 어구마다 어구의 위치를 표시하는 부표(浮標)·부자(浮子) 또는 깃대를 설치해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설치된 부표·부자 또는 깃대에 가로 30센티미터 이상, 세로 20센티미터 이상의 표지를 붙여야 한다.
3. 제2호의 표지에 제8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아래 표와 같이 순서대로 알아보기 쉽게 표기해야 한다.

(예시)
 어구 소유자의 성명(연락처): ○○○(000-0000-0000)
 허가어선의 명칭(어선번호): ○○○호(어선번호)
 사용어구의 일련번호: 10-1[**사용어구의 총 개수(통수, 틀수 등)-해당 어구의 일련번호**]

* [법령근거] 「수산업법」 제76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수산업법」 제76조에 따른 어구실명제 도입에 따라 '23년 8월 7일 까지 의견수렴 중 (1차 30일, 2차 60일, 3차 90일)

□ 금지기간 및 금지체장 위반행위 점검

- 7월 주요어종의 포획 금지기간·체장(체중) 생산·유통 감시 강화

- (주요어종) 대게, 꽃게, 갈치, 청어, 개서대, 참조기, 말쥐치 등

품 종	금지기간	금지체장(체중)
대게	6.1~11.30.(131°30'E 이동 6.1~10.31.)	9cm(암컷대게 연중 금지)
꽃게	6.21~8.20(연평 등 서해5도 7.1~8.31)	6.4cm(외포란 암컷꽃게 연중 금지)
말쥐치	5.1~7.31(정치망·연안·구획 6.1~7.31)	18cm
낙지	6.1~6.30 (지자체 고시 별도)	-
청어	-	20cm
전어	5.1~7.15(단, 강원, 경북 제외)	
갈치	7.1~7.31(근해채낚기, 연안복합 제외)	18cm
개서대	7.1~8.31	

* [법령근거]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어업정지] 1차 30일, 2차 45일, 3차 60일

2 어선법

□ 장거리위치발신장치(D-MF/HF) 설치 및 상시작동 홍보 강화

- 해상디지털 통신장비 설치사업 2차 대상업종*의 의무설치기한('23.7.31)이 다가옴에 따라, 장비 상시작동에 대한 지도·홍보 강화

* (2차) 근해자망, 근해장어통발, 대형트롤, 쌍끌이대형저인망,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 외끌이대형저인망,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23.7.31까지 설치·작동)

(3차) 대형선망, 동해구중형트롤,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 소형선망, 근해안강망, 근해봉수망, 근해자리돔들망, 근해문어단지, 근해형망(~'23.12.31까지 설치·작동)

□ 부산·울산·경북지역 주요 항·포구 「어선법」 위반사항 점검

- 「어선법」에 따른 의무설치 대상 어선위치발신장치 중 어느 하나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전원을 끌 경우 행정처분

* 과태료 기준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 어선검사 이후 선체·기관·설비 등을 임의로 변경(불법 증·개축, 검사 대상장비 탈거·변경 등)하여 상태를 유지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분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어선중개업 등록(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행위 시 사법처분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3 어선안전조업법

□ 주요 내용

- 「어선안전조업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특정해역 또는 조업자제해역에서 조업하려는 어선은 신고기관에 출어등록

- 기상특보(태풍·풍랑·폭풍) 및 기상예비특보 발효 시 어업지도선, 해경함정의 이동 및 대피명령 준수, 구명조끼 의무 착용

- 특보 발효 시 사고 예방 및 신속한 구조를 위해 어선의 위치보고 준수

* 1일 1~3회 위치보고+풍랑특보(12시간 마다), 태풍특보(4시간 마다)시 추가 위치 보고

4 면세유

□ 지도점검 계획 : 7월 중

- 지역/대상 : 울산, 충북 / 관리기관, 선박·시설 등 공급대상 사용자
- 주요 점검 사항 : (해·내수면) 관리기관 공급중지 기간 중 부적정 공급 여부, 사용자의 공급대상 존재 여부 및 낚시어선업 공급요건 충족 여부 등 (기타) 구비서류 관리내역 등

< 기타 면세유 사용금지 철저 요청 >

- '15. 7. 1.부터 과징금 납부해도 해당 불법어업 어업정지 처분에 상응하는 기간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0조 제8항
- 양식장 관리선 소유한 어업인이 본인 양식장 관리를 위해 공급받은 면세유를 타 양식장의 어장관리를 목적으로 어선 이용(승인) 시 사용불가(‘용도 외 사용’ 해당)

□ 관리기관 · 어업인 · 석유판매업자별 주요 점검사항 : [붙임4]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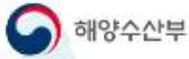
5 낚시관리 및 육성법

□ 낚시어선업 영업구역 및 낚시제한 기준 위반행위 지도 · 단속

-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시·도지사의 관할수역(영해) 내에서 영업 하여야하며(제27조), 낚시객을 어선원으로 위장한 영업 행위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 [별표1] 및 [별표2]에 따라 포획 금지체장·체중, 포획 금지기간 등 준수 및 낚시승객 대상 점검·지도
* [법령근거] 「낚시관리법」 제7조에 따라 80만원 과태료 부과

□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의 판매 등 금지

- 누구든지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됨
* [법령근거] 「낚시관리법」 제7조의2에 따라 과태료 부과(1차 75만원, 2차 150만원, 3차 300만원)



새롭게 도입된 주요 어구 관리제도 안내

해양환경보전과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어구 관리제도가 강화되었습니다.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어구 생산·판매업 신고제 (시행, '23.1.12)

✓ 근거 수산업법 제72조, 제73조

- ✓ 신고 의무자
- ① 어구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것 (이하 “어구생산업”이라 한다)을 업으로 하려는 자
 - ② 어구를 판매하는 것(수입하여 유통·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어구판매업”이라 한다)을 업으로 하려는 자

* 신고제 대상 어구 : 수산업법상 면허·허가어업에서 사용하는 주요 어구와 어구자재 품목(뒷면 어구목록표 참고)

✓ 신고 절차·방법 주(主)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방문) 해당 시·군·구 해양수산 관련 부서에 문의

※ '23년 하반기부터 온라인 신고(정부 24) 가능



신고서 및 기록장부 서식 찾는 방법

- 인터넷 주소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검색 : ① 신고서 ⇨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76조, 별지 제70호서식
② 생산·판매 기록장부 ⇨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79조, 별지 제72호서식

✓ 의무 ① 생산·판매한 어구의 종류·구매자·수량 등을 기록·보존(3년간)

②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 준수

* 허가되지 않은 어구의 제작·수입·보관·운반·진열·판매 등 금지

✓ 벌칙 과태료(2백만원 이하) 및 행정처분(3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영업폐쇄)

※ 신규 제도의 적응을 위해 1년간('23.1.12~'24.1.11) 계도기간 운영

어구 생산·판매업 신고제 대상 어구 목록표

구분	어구의 명칭	어구자재 신고품목		
면허	정치망어구	그물, 뜰, 밭줄, 로프		
허가	근해어업	저인망어구	그물, 뜰, 밭줄, 로프	
		트롤어구		
		선망어구		
		채낚기어구		
		자망어구	그물, 뜰, 밭줄, 로프	
		안강망어구		
		봉수망어구	그물, 밭줄, 로프	
		들망어구		
		통발어구(장어)	통발, 로프	
		문어단지어구	단지, 로프	
		통발어구	통발, 로프	
		연승어구	낙싯바늘, 낙싯줄, 로프	
		형망어구	그물, 로프	
		권현망어구	그물, 뜰, 밭줄, 로프	
허가	연안어업	안강망어구	그물, 뜰, 밭줄, 로프	
		선망어구	통발, 로프	
		통발어구		
		조망어구	그물, 뜰, 밭줄	
		선인망어구	그물, 뜰, 로프	
		자망어구	그물, 뜰, 밭줄, 로프	
		들망어구	그물, 밭줄, 로프	
		낙시어구, 문어단지어구, 패류껍질어구, 패류미끼망어구, 손잡치어구	낙싯바늘, 낙싯줄, 추, 로프, 단지	
		구획어업	정치성 구획어구	그물, 뜰, 밭줄, 로프
			이동성 구획어구	그물, 뜰, 밭줄, 로프

어구 생산·판매업 신고제 담당 기관 및 연락처

해양수산부 어업기자재관리과 044-200-5604-5
부산광역시 수산정책과 051-888-5401
인천광역시 수산과 032-440-4862
울산광역시 해양항만수산과 052-229-2993
경기도청 해양수산과 031-8008-4509
경상남도 수산자원과 055-211-4014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 해양수산과 054-880-7731
전라남도 수산자원과 061-286-6934
전라북도 수산정책과 063-280-4652
강원도 환동해본부 수산정책과 033-660-8334
충남도 수산자원과 어업지원팀 041-635-4135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064-710-3245

어구 실명제(시행, '23.1.12)

- ✓ 근거 수산업법 제76조
- ✓ 실명제 대상 어업 ① (근해) 자망·안강망·통발어업 ② (연안) 개량안강망·통발·자망어업 ③ 실뱀장어안강망어업
- ✓ 표시 사항 1. 어구 소유자의 성명 및 연락처 2. 허가를 받은 어선의 명칭 및 어선번호
3. 허가받은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 일련번호
- ✓ 표시 방법 부표·부자 또는 깃대에 가로 30센티미터 이상, 세로 20센티미터 이상의 표지를 부착
- ✓ 처벌 표시의무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어구 보증금제(시행, '24.1.12)

- ✓ 근거 수산업법 제81조
- ✓ 내용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폐어구들 육상에 지정된 장소로 되가지오면 어구가격에 포함된 일정 금액(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
- ✓ 제도 적용 대상자 어구 생산 및 수입업체, 통발 어업인
- ✓ 보증금 부과 대상 통발 어구 우선 시행(단계적으로 자망, 부표 등으로 확대)
- ✓ 보증금액 통발 어구 종류별 일정 금액(의견수렴 후 결정 예정)
- ✓ 관리기관 어구보증금관리센터(051-718-2411)
- ✓ 제도문의 해양수산부 어업기자재관리과 (044-200-5608-9)




* 수산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추진중

어선법 위반 시 처벌규정

위반조항	위반조항 내용	처벌
제13조 제1항	어선을 받지 않고 어선을 건조·개조하거나 할수업자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 벌금
제13조 제2항	등록을 하지 아니한 어선을 어선으로 사용한 자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 벌금
제14조 제1항, 제2항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어선업무 또는 발급업무 한 자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제15조 제1항	복원성능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에 사용한다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제16조 제1항	어선정밀, 권조관을 은폐·변경 또는 제거하고 항행 또는 조업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제17조 제1항	어선정밀을 받지 않고 항행 또는 조업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불법어업신고
1588-5119

☎ 46079(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안로 638)
TEL : 051)410-1090, 1091
FAX : 051)410-1036, 1046
Web : eastship.mof.go.kr

위반조항	위반조항 내용	처벌
제23조	어선정밀을 받은 후 해당어선의 선체·기판, 설비 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설치한다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제24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형사변경신청 또는 경정을 받은 자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제25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건조사업장(제조사업장 또는 정비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자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제27조	어선정밀사용에 기한된 사항을 위반하여 항행 또는 조업한다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제28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증서, 확인증을 발급받은 자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제31조제1항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제31조제2항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업을 한 자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제31조제3항	중개업 영업기록을 허위·과장하는 경우	등록 취소
제31조제4항	중개업 영업기록(가) 중개업을 한 경우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제31조제5항	건조·개조·수리·중개업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500만원이하 벌금
제31조제6항	건조·개조·수리·중개업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100만원이하 벌금
제31조제7항	중개업 등록요건 미달	1차: 영업정지 3개월/과징금 150만원 2차: 영업정지 2~3개월/과징금 450만원 3차: 영업정지 3~6개월/과징금 900만원
제31조제8항	가계계좌서 목적성·목적, 그 밖의 내용을 거짓 기재 또는 허위 기재 작성	1차: 영업정지 3개월/과징금 150만원 2차: 영업정지 2~3개월/과징금 450만원 3차: 영업정지 3~6개월/과징금 900만원
제31조제9항	지도감독을 기피 또는 방해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위반조항	위반조항 내용	처벌
제4조	만제출수선을 초과하여 사설, 어획물 또는 채굴 등을 송선 또는 적재하고 항행한다	과태료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제5조	어선정밀(안전장치) 미착용	과태료 1차: 25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
제33조 제4항, 제5항	해안선에 관한 자료를 선장에게 제공하지 않거나 어선장에 비치하지 아니한다	과태료 1차: 25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
제15조	선박국적증서 등 미제출 또는 조업	과태료 1차: 25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
제16조	어선정밀, 어선번호 미표기	과태료 1차: 25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
제17조	변경등록 미신청	과태료 100 이하: 50만원 100 초과: 50만원+미납 납금
제19조	등록불응 미신청	과태료 100 이하: 50만원 100 초과: 50만원+미납 납금
제19조	어선번호, 선박국적증서 등 미제출	과태료 1차: 25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
제21조	어선정밀 미수검	과태료 1차: 25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
제26조	해안선에 관한 자료를 선장에게 제공하지 않거나 어선장에 비치하지 아니한다	과태료 1차: 25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
제29조	검사증서 미제출 또는 조업	과태료 1차: 25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
제31조제5항	중개업 영업기록(가) 중개업을 한 경우	과태료 1차: 25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
제31조제7항	보수교육을 받지 않는 자	과태료 1차: 25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
제31조제9항	선박국적증서 미신청, 변경등록 미신청 또는 전처분 미제출	과태료 개별: 30만원 합계: 70만원

안전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어선법 안내

안전한 바다, 안전한 어선. 동해어업관리단이 엄정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East Sea Fisheries Management Service

어선법이란?

어선 안전기준과 설비기준 강화를 통한 어선의 안전 확보 및 행정사고 예방을 위한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어선법에서 꼭 지켜야 할 내용

- 무등록 어선의 사용금지**
어선으로 사용하고 자 하는 선박을 선적함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드시 어선원번호에 어선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무허가 어선의 건조·개조 및 발주**
해당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어선을 건조·개조하거나 발주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
- 절반 어선 개조란?**
1. 어선의 길이·너비·깊이를 변경하는 것
2. 추진기관을 새로 설치하거나 추진기관의 종류 또는 출력 변경하는 것
3. 어선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어업의 종류를 변경할 목적으로 어선의 구조나 설비를 변경하는 것

무선설비 설치 및 상시 작동

반드시 규정에 적합한 무선설비를 설치하고 상시 작동하여야 합니다.

〈무선설비 설치 기준〉

- 길이 24미터 미만 어선 중 2~5톤 어선 VHF-DSC(2차대용 무선설비)
- 길이 24미터 미만 어선 중 5톤 이상 어선 VHF-DSC + SSB(2차대용 무선설비)
- 길이 24미터 이상 어선 VHF-DSC + SSB + EPRB(위성 비상위치 지시용 무선포지)

04 어선위차발신장치 설치 및 상시 작동

어선의 안전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선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장치를 반드시 갖추고 이를 작동하여야 합니다.

또한 고장·사고 분실 시 자체없이 해양경찰청에 신고 한 후 15일 이내에 수리 또는 교체할 수 있어야 하며, 전제지불 및 기상악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5일 범위 내에서 연기 가능 합니다. (무선설비가 어선위차발신기능을 갖추고 있을 경우에는 어선위차발신장치로 인정)

〈어선위차발신장치 설치 기준〉

- 2톤 미만 V-PASS(비배스)
- 2톤~10톤 V-PASS + VHF-DSC(초전대용 무선설비)
- 10톤 이상 V-PASS + VHF-DSC + AIS(자동식별장치)

05 만제출수선 표시 및 초과 금지

만제출수선을 표시하여야 하며, 만제출수선을 초과하여 사설, 어획물 또는 채굴 등을 송선 또는 적재하고 항행하여서는 안 됩니다.

06 선명·선박명·어선번호의 부착 및 표시

어선의 선명·선박명·어선번호판을 반드시 어선에 표기해 주시고 고의로 이를 은폐·변경·제거하여서는 안 됩니다.

07 복원성능 시험 및 복원성 자료의 선내 비치

어선의 소유자는 복원성기준에 적합함에 대하여 복원성 성능을 받아야 하며, 관련자료는 선내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복원성 시험 대상 어선〉

1. 배의 길이 24m 이상 어선
2. 총톤수 10톤 이상의 낚이배

08 선박국적증서 등 선박서류 선내 비치

어선의 규정에 맞는 선박서류를 반드시 선내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토출될 필수 서류〉

1. 총톤수 20톤 이상 어선 : 선박국적증서
2. 총톤수 20톤 미만 어선 : 선적증서
3. 총톤수 5톤 미만 무등록선 : 등록명첩

09 어선의 검사 및 검사증서의 선내 비치

어선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드시 어선정밀을 받아야 하며, 해당 증서를 선내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0 어선정밀사용시 기재사항 위반

어선정밀사용에 기한된 복원성시험을 초과하거나, 만제출수선의 표시사항을 변경하여서는 안 됩니다.

1 무등록 중개업

어선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어업관리단에 어선중개업 등록·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어선중개업의 등록요건

어선중개업은 사무소의 확보, 보증보험의 가입, 어선중개업고육이수를 하고 결재서류 등을 검토하여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3 어선중개 거래계약서

어선중개업자는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그 밖의 내용을 거짓 기재 하여서는 안 되며, 거래계약서 사본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불법어업신고 및 신고자 보상제도

정당한 대한민국, 정당한 어업지도 동해어업관리단이 엄정하겠습니다.

신고대상

1. 어선법, 수산업법, 수자원관리법, 내수어업법, 어업자 정보보호법, 중수산업개발법 위반자
2. 어선의 무허가 건조, 무등록어선의 사용, 불법 중개, 검사 미수검(선박)의 항해, 조업, 무등록 중개업 등의 행위자

지급방법 및 절차

불법어업 신고, 행정조사 수사, 포상금 심사위원회, 포상금 지급

문의: 전화 1588-5119,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서울

불법어업 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서 제출, 포상금 지급 대기, 심사위원회 심의, 신고금 받은 후 신고금 지급

포상금 지급규정

유형	구분	포상금액	포상금결정 기준
사범사범	경형범	1년이상 300만원	법정액의 100분의 50 (단, 상액 300만, 하액액 50만원)
	중형범	1년미만 200만원	
	일명유예	50만원	
	선고유예	20만원	
형량차별	일명유예	200만원	형량기준의 50% 이상
	중형범	100만원	
	경고	20만원	
과태료	과태료 부과	20만원	형량기준의 과태료 부과기준

수상자원의 남획예방 및 어업정서 확립에 크게 기여한 신고사범에 대하여는 포상금액의 2배(최대 600만원) 지급

* 본 지침의 내용은 불법어업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해양수산부 고시 제2019-23호, 23.03.01)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거래는 편리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어선중개거래는 등록된 어선중개업자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무등록자의 어선중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어선법 사무취급요령」 개정시행(20.9.25.)

제18조의 2(어선중개업 등록증 확인) 어선소유자 이외
제3자를 통해 어선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3자의 어선중개업 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어선중개업자’란

「어선법」 제31조의 2에 따라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어선중개업자의 등록요건

보장보험의 가입 + 중개사무소 확보 + 어선중개업 교육 이수

어선중개업자 등록문의

동해어업관리단 051.410.1091
서해어업관리단 061.240.7991
남해어업관리단 064.780.2433



어업허가정보, 어선검사정보,
어선중개업자정보 등
어선매매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전국 모든 지역의
어선매매와 중개업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선거래를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인터넷
어선중개 거래사이트
입니다.

어선거래시스템 이용문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044.330.2400

www.어선거래.kr

붙임4 면세유 주요 점검사항

□ 주요점검 사항

점검 대상	점검내용	제재 사항
관리 기관	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류 카드 등 발급	가산세* 징수 * 감면세액의 100분의 40
	②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관리부실로 인하여 면세유류카드등을 잘못 발급하거나 어민 외의 자에게 발급	가산세* 징수 * 감면세액의 100분의 20
어업 인	① 어업기계 또는 선박 및 시설의 보유 현황과 어업경영 사실 신고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거나, 어업기계 또는 선박 및 시설의 취득·양도 또는 사망·이어(離漁)등으로 신고 내용에 변동 사항 발생 시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변동내용 미신고	2년간 면세유 사용 불가
	② 면세유류 구입카드 또는 출고지시서와 그 카드 또는 출고지시서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2년간 면세유 사용 불가
	③ 어업기계 및 선박의 사용실적, 어업기계 및 어업용 시설의 생산실적을 최종 제출기한까지 미제출 또는 거짓으로 제출	1년간 면세유 사용 불가
	④ 어업용 외 용도 사용(자동차, 가정용 보일러, 무허가 어선 및 시설 등)으로 감면세액 및 가산세 추징사유 발생 시	2년간 면세유 사용 불가
	※ 상기 4가지의 사유로 면세유 사용 불가 시, 그 어민등과 공동으로 생산 활동을 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 포함	
	⑤ 면세유류 구입카드 또는 출고지시서와 그 카드 또는 출고지시서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은 경우	감면세액 + 가산세* 추징 * 감면세액의 100분의 40
	◆ 그 외, 면세유 사용 불가 기간 안내 ◆ - 어업 등에 대한 제한(취소, 감척 등) 등으로 어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해당 어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기간 - 「수산업법」 따라 어업 등에 대한 제한이나 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 → 과징금(감경하거나 가중하기 전의 금액 기준)에 상응하는 정지처분 기간	
석유 판매업자	① 신청하여야 할 환급·공제세액을 초과 신청	감면세액 추징
	② 부당한 방법으로 환급·공제세액 신청	감면세액 + 가산세* 추징 * 감면세액의 100분의 40
	※ 감면세액 추징 사유 발생 시, 관리기관 중앙회는 면세유 판매 지정을 취소 할 수 있으며 지정취소일부터 5년간 면세유 판매불가(조특법 제106조의2 제13항)	